

## 직원교육비지원규정

제정 2000. 9. 1

개정 2005. 9. 1

개정 2012. 3. 1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'대학'이라 한다)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업무의 전문화와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교육비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학부과정 편입 및 대학원과정과 해당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전문교육과정(1년 이상)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직원의 교육비 지원업무에 적용한다.

**제3조(사무관장)**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심사 및 선정의 업무는 교육지원처에서 관장한다.

**제4조(지급대상 선발기준)** ① 위 제2조에서 규정한 교육과정에 참가하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대학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대학의 직원으로서 교육비 신청당시 3년 이상 근속한 일반직, 기술직, 기능직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한다. 다만 근속년수 3년 이내의 직원 중 특별히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선발 할 수 있다.

1. 전년도 직원 업적평가 점수
2. 수학기획 및 학교발전 기여 계획서 심사점수
3. 소속 부서장의 추천서
4. 총장 특별점수

③ 교육비를 지원하는 연간 총인원은 전체 직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다.

**제5조(지급방법 및 금액)** ① 선발된 직원에게는 1회에 한하여 별첨에 따라 교육비를 지급한다. 다만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액이 지급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등록 금액만을 지급한다. (별첨 참조)

**제6조(지급금액의 변경)** 교육비는 매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**제7조(자격상실 및 비용반환)** 교육비를 지급받은 직원이 소정의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고 교육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- ① 본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본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③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&lt;별첨&gt;

## 직원교육비 지원금액

(단위: 원)

과 정	대학원과정	학부과정	전문교육과정
지원금액	3,000,000	3,000,000	1,000,000